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¹⁾

유 민 상 연구위원

요약

- 각 경제(gig economy)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속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일거리를 제공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함. 이 연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음. 특히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종합적으로 플랫폼 노동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굴레가 되어버리기도 하였음. 웹기반 노동 플랫폼과 지역기반 노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고, 고숙련 기술을 가지고 겸업으로 진입하는 사람과 저숙련 기술을 가지고 전업하는 사람의 특성이 다르므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단 하나로만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음. 다만 플랫폼에만 의지하여 일을 할 경우 플랫폼의 불안정의 타격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았음. 취약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자들에게는 위험과 불안정의 심화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플랫폼 노동의 장기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음. 특히 면접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착취의 위험과 사고발생 등 위험에 대한 미보장의 위험이 크게 나타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청년들을 위하여 국가 차원, 플랫폼 기업 차원, 시민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언을 제시하였음.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은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안, 플랫폼 기업 차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은 플랫폼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시민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은 시민사회조직 차원의 조례체계 마련 및 교육을 통한 플랫폼의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및 권익침해 예방 방안임.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고유과제로 수행된 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2020).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즉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gig worker)의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 ▶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한 개인이 특정 과업이나 시간 등에 한정하여 임시적, 초단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와 노동형태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되고 있음.
- ▶ 생애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 이 연구는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매우 초기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포괄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플랫폼 노동을 통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음. 또한, 플랫폼 노동이 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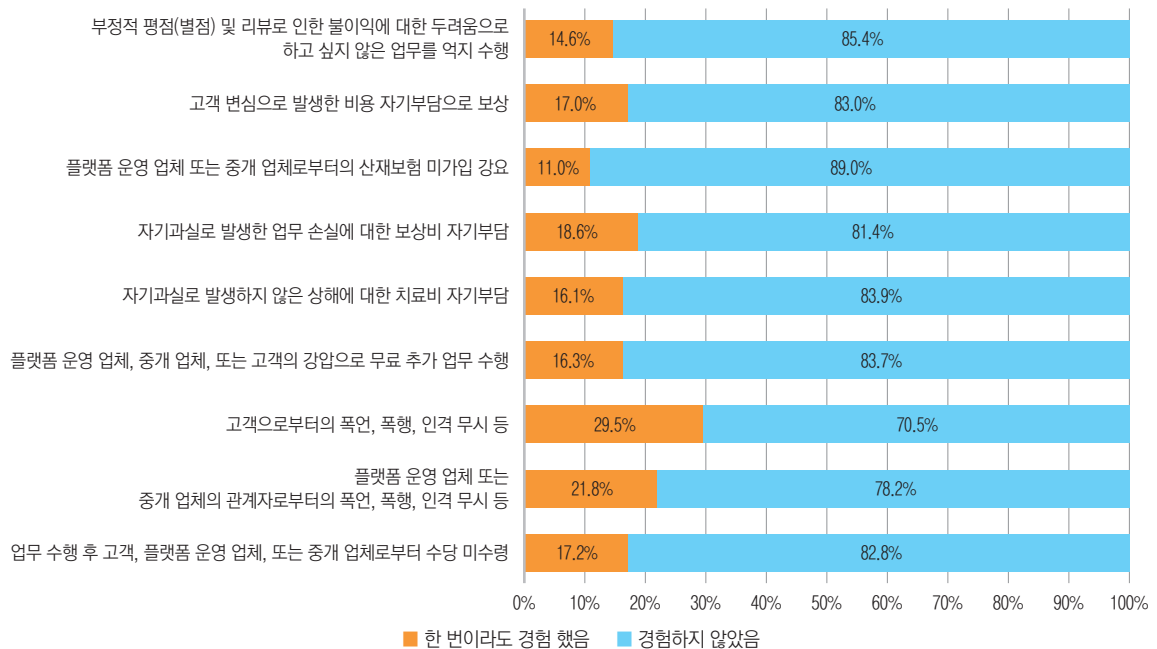
2. 연구결과

▶ 디지털 플랫폼 노동 관련 이론적 배경

- 각 경제(gig economy)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음.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일거리를 제공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노동의 이점을 누린다고 알려진 반면, 경쟁으로 인한 수당의 지속적 감소, 장시간 노동, 사회보장 사각지대 등의 불안정에 놓여 있음(Pesole et al., 2018).
-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그 안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러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오고 있음.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 법제도와 새롭게 나타난 노동형태와의 부정합, 이로 인한 노동권의 사각지대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근로자성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들을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식, 혹은 기본의 틀을 해체 혹은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들이 도출되고 있음(장지연 외, 2017; 장지연 외, 2020; 김철식 외, 2019; 김준영 외, 2018; 백승호, 2018).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 (플랫폼 노동 경력의 주요 특징) 청소년 종사자가 플랫폼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음. 이에 비해 청년 종사자의 경우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플랫폼 노동 현황)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직종은 음식 배달로 8.02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청년의 경우에는 택배 배송 및 화물운송 종사자가 하루 평균 9.65시간 일해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음. 지역 기반형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대부분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 노동하였음. 반대로, 청소년과 청년 공통으로 전문 프리랜서의 노동 시간이 가장 짧았고,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5.8시간 내외에 그쳤음.



[그림 1]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 실태

- (플랫폼 노동의 주요 어려움과 문제점) 전체 종사자의 12.9%는 지난 한 달 동안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 태도나 성과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업체의 할당 업무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업무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업체 배정 및 업무 수행 거부,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근무 태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음.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일거리 제한이 가장 많음. 종사자에게 업무 수주를 제한하거나 좋지 않은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51.8%에 달하였음. 종사자 가운데 일부는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며 부당처우를 경험한 경험이 있음. 가장 빈도가 높았던 부당처우는 고객 또는 플랫폼 운영업체 또는 중개업체 관계자에 의한 폭언·폭행·인격 무시로 종사자 10명 중 5명이 이를 경험했음. 부당처우에 대한 직종별 평균 누적 노출 실태를 보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 프리랜서가 평균 5.07개 유형의 부당처우에 노출돼 가장 심각했고, 청년의 경우 승객 운송 및 대리운전 종사자가 평균 3.92개 유형의 부당처우에 노출돼 가장 심각했음. 그러나 실제 부당처우가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가장 많이 취한 대처방식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플랫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플랫폼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 대안은 분쟁 및 사고에 대한 효과적 해결 절차 마련임. 4대 보험 적용, 법이나 제도를 통한 수수료 규정, 플랫폼 노동의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음. 직종에 따라 선호 대안의 차이점도 확인되었는데 청소년 퀵서비스 종사자와 청년 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사회적 경력 인정 시스템의 마련을, 청소년/청년 음식 배달 종사자, 청소년 전문 프리랜서, 청년 택배 배송 및 화물운송 종사자, 청년 승객 운송 및 대리운전 종사자는 분쟁 및 사고에 대한 효과적 해결 절차를, 마지막으로 청년 퀵서비스 종사자는 법이나 제도를 통한 수수료 규정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하였음. 특히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 필요성의 경우 승객 운송 및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청년 종사자의 공감 수준이 여타 직종의 종사자보다 높았음.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 (개요) 면접조사는 청소년과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의 노동 경험, 인식, 전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면접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포토보이스(photo voice)를 시도하여 그들의 시선을 담아보고자 하였음. 면접조사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와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청소년기관 관계자 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의 주요 경험)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일한 집단이라기보다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낮은 문턱을 넘어 우연한 기회에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였음.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형태와 다른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이 본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만족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플랫폼의 새로운 통제 시스템인 알고리즘과 전통적 통제 시스템 등으로 통제되고 있었음. 특히 GPS 감시, 평가제도, 수락율, 응답률 등의 형태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정보 파놉티콘의 위험이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위험과 불안정) 플랫폼 노동자들 중 배달 노동자들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었지만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회적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동일하였음. 플랫폼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플랫폼이 주는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음.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단가와 이로 인해 요동치는 소득, 그리고 극심한 경쟁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한 쪽으로 내몰고 있었음.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불안정성에 취약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 중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취약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0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험 노출 및 권익 미보장) 10대부터 배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을 시작한 어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제외 문제는 어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들은 경쟁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일거리 강요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플랫폼에서의 밑바닥 노동은 강제배차와 업무 강요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망변화)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도 인간다운 노동을 하길 바라고 있었음. 이들은 플랫폼의 비람직한 변화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경력증명과 역량증진 지원, 노동 교육 등을 제안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로서 적정임금과 공정한 수익분배, 표준계약 및 공정계약, 표준단가와 수수료 규정, 사회시스템 변화로서 교통단속의 강화, 난립해있는 플랫폼의 통합,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익센터, 대안적 일자리와 훈련 제공 등을 제안하였음. 마지막으로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바라고 있었음.
-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자면, 양적연구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근무 태도나 성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처우를 당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적연구에서도 낮은 진입장벽, 플랫폼 업무의 자율성, 건당 소득의 극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경쟁적인 업무 수준으로 인한 단가 하락 요인이 높아지고 단가 변동이 심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높아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음. 플랫폼은 노동자 통제 기제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노동자 보호 기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국가의 법, 정책적 테두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 관계법령 및 정책분석 결과

- (국내 플랫폼 노동 관계법령의 문제점 및 변화방향)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맞게 개정하고, 대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이 되는 '사용종속성'을 판단할 때 '상당한 지휘·감독',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시장 접근성', '노무

제공의 지속성과 전속성'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변화방향)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해 '전속성' 기준을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게 바꾸고, 고용보험법상 부분급여 도입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노동관계법에 정한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약조건 명시, 적절한 소득 수준과 노동시간 및 휴식 시간 보장 등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부와 지자체 주요 대책 현황 및 함의)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는 경사노위 활동을 통해 IT/SW 업종과 배달 업종 관련 노사정 협약을 맺는 등 플랫폼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불과 1~2년 사이 마련된 정책으로 향후 협약 이행 과정 모니터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이 필요함.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등은 플랫폼 노동 관련법 제·개정 이전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들 조례는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노동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하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내 청소년·청년 플랫폼 노동 현안에 밀착한 제도 마련에 기여할 것임.

3. 정책제언

▶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10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실현

-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특수한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음. 핵심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고 해서 모두 불안정 노동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불안정은 누군가에게 더 극심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불안정이 개인의 인생에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음(Standing, 2011).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앞으로 플랫폼 노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유인할 것임. 플랫폼 노동의 특성 중 높은 업무 자율성과 소득 극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 업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거리와 이에 유입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김준영 외, 2021; 김수영, 강명주, 하은솔, 2018). 따라서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권익을 가진 노동자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와 어떻게 플랫폼 노동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으로 만들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가 제안하는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하는 것임.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시민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의 발생, 인권의 시각에서 기본권 미보장의 상태에 놓일 위험을 제거해야 함. 또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유동적인 특성은 근로조건의 불안정을 파생시키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삶과 미래 전망을 불안정,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이 연구는 10대 연소근로자들이 노동 플랫폼에 진입하면서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함. 현재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특별한 보호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무력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불안정과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따라서 산업화 이후

국제조약으로 금지 및 규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Child labour and exploitation)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호”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노동 및 착취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음(UNICEF, 2021).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아동노동 및 경제적 착취 금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함. 10대 청소년들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험 직무에 배달 플랫폼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정책제언의 주요 프레임

- 이를 반영한 정책제언의 프레임은 세 가지임. 첫째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안, 둘째는 플랫폼 기업 차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셋째는 시민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시민사회조직 차원의 조력체계 마련 및 교육을 통한 플랫폼의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및 권익침해 예방 방안임.



[그림 2] 정책제언의 프레임: 국가차원, 사회차원, 플랫폼차원의 변화방향

▶ 국가차원 변화방향

- 국가차원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방안은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안임. 노동관련 법제의 도입 취지와 같이 노동자를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권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
- 국가차원의 변화방향 첫 번째는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으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보장, 최저임금 보장, 휴게시간 보장, 노동3권 보장, 인격권 보장 등임.
- 국가차원의 변화방향 두 번째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으로서 산재보험의 확대 및 실질적 보장,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및 실질적 보장, 건강보험의 확대적용 및 건강검진 기회 제공,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고용주 책임성 강화,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등임.
- 국가차원의 변화방향 세 번째는 10대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경쟁적 일자리로부터의 연소근로자 보호,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위험으로부터의 연소근로자 보호 등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연소근로자가 플랫폼 내에서 취약한 밑바닥 노동의 위험을 안고 있었음.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경쟁적 일자리로부터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임.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내 플랫폼 노동 청소년을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거나, 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여 노동인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플랫폼 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배달 업무를 위험직종으로 분류하는 것 등 매우 강력한 조치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기업 차원 변화방향

- 플랫폼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및 사회적 책임 분담 방안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플랫폼 기업 차원 변화방향 첫 번째는 노동 통제의 해소로서 '정보 파놉티콘'에 비견될 지나친 개인에 대한 정보 감시 등을 법적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GPS 추적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노동자 인권이 개선되어야 함.
- 플랫폼 기업 차원 변화방향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개발 지원장치로서 노동 경력증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플랫폼 노동이 젊은 노동자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력을 증빙해주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임.
- 플랫폼 기업 차원 변화방향 세 번째는 노동자 인권보장 책임부여로 사고예방 기능을 부여하고 인권침해 예방 기능을 부여하는 것임. 특히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주, 소비자로부터의 인권침해 위험과 분쟁위험을 가지고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역시 필요함.
- 플랫폼 기업 차원 변화방향 네 번째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서 노동 플랫폼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금조성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포함됨.

▶ 시민사회 차원 변화방향

- 시민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노동 플랫폼의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은 세 가지임.
- 시민사회 차원 변화방향 첫 번째는 청소년과 청년 노동보호 기구의 설치임. 이는 플랫폼 노동보호 센터 혹은 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하는 것임. 현재 청소년 노동권익보호기구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담당할 수 있음. 관련 인력은 청소년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예를 들어, 플랫폼 종사자들이 놓일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함.

- 시민사회 차원 변화방향 두 번째는 노동인권 교육임.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플랫폼 노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플랫폼 진입 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급하고 관련 조력체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의 보험 미가입 등 매우 위험한 형태의 노동을 단기 수익을 위해 지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철저히 하여 더 큰 손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플랫폼에 진입하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진입의 문턱을 높이기’ 차원에서 플랫폼에 진입할 때 플랫폼 상에서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분쟁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필수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차원 변화방향 세 번째는 사회연대로서의 보호와 역량 강화임. 라이더 유니온과 같은 노조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권개선에 관한 강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조직화를 돕고, 협동조합 등의 제3섹터를 활용한 플랫폼의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수영, 강명주, 하은솔 (2018). 플랫폼 경제활동에 대한 시론적 고찰: 유형, 특성, 예상위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5(4), 199-231.
- 김준영,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2021).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브리프.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 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철식, 장귀연, 김영선, 윤애림, 박주영, 박찬일, 홍석만, 신순영 (2019).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민인권위원회.
- 백승호 (2018).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월간 복지동향, (233), 27-33.
- 장지연, 김근주, 박은정, 이승윤, 이철승, 정슬기 (201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Pesole, A., Brancati, M. C., Fernández-Macías, E., Biagi, F., & González Vázquez, I. (2018). Platform worker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UNICEF (20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771/> 에서 2021년 12월 1일 인출.